

- 모든 주사제는 2001년 11월 1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대상
-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폐지
- 외래본인 일부부부담금 난정방법에 따른 명세서 작성요령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병원운영 관계자들은 의료관계 법률과 제도를 적용하거나 해석하는데 있어 종종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본 란은 병원경영에 있어 궁금한 점이나, 의료제도 ·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의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대한병원협회지 Q&A로 연락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ohy@kha.or.kr

**Q :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A :**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5호의 개정으로 “모든 주사제”가 의사 ·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동 규정은 개정 부칙 제1조 제2항에 의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2001년 11월 15일부터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의 예외대상에 해당됩니다.

**Q :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폐지된다고 하던데?**

**A :** 지난 9월 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1년 정기국회 제출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및 제8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 병원 중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었던 것이 동 제도(법인세법 제99조 등)의 폐지로 모든 법인병원들이 특별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동 제도의 폐지사유로 현행 특별부가세는 외국에 유사 사례가 없는 예외적인 제도이고, 과세대상의 70%가 감면되고 있

어 과세의 실효성이 적으므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오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 외래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른 명세서 작성요령은?**

**A: ■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운 050.3-177(2001.10. 4)**

▶ 동지역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포함)에서 동일인이 동일날 2개 과목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동일인이 동일날 2개 과목 이상의 외래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을 통합하여 산정·수납할 경우에는 주된 상병이 속한 진료과목을 기준으로 1장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만,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의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진료과목별로 각각 산정·수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날 발생하는 2개 과목 이상의 외래진료비용을 진료과목별로 구분·작성하여야 함(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통보가 있을때까지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별표2]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율"이 2001.7.1자로 개정됨에 따라 6월, 7월에 걸쳐서 입원한 환자가 CT를 촬영한 경우

☞ 6월 진료분과 7월 진료분을 구분·작성하여 각각 월별로 청구

▶ 8,9월심사지침

■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기 051.1-813(2001.9.5), 051.1-820(2001.10.11)

## 신설

연번	제 목	심사기준(지침) 내용
1	이팩사정의 인정기준(117)	우울증의 치료를 받아 이팩사정은 SSRI계열의 항우울제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우울증으로 확진된 경우에 투여용량은 1일 최대 225mg까지 인정한다.
2	시너시드(주) 인정기준(611)	<p>시너시드(주)는 다음의 경우에 투여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정범위 이외에 특이사례 발생시는 사례별로 심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응증 : Blood culture(혈액배양검사)상 반코마이신 저항성 Enterococcus faecium이 증명된 경우(VRE bacteremia에만 인정).</li> <li>○ 투여용량 : 7.5mg/kg의 용량을 8시간 간격으로 1일 3회</li> <li>○ 투여기간 : 통상 7~14일</li> </ul>
3	치액, 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산정시 인정 기준	치액 또는 치루수술 후 좌욕은 수술부위의 감염예방과 통통·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하며, 단순처치는 감염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바, 좌욕과 단순처치를 동시 실시시에는 주된 처치인 좌욕만 인정(수술 익일부터 7일 이내)하고, 치료기간 중 좌욕없이 단순처치만 실시한 경우에는 단순처치료를 3일 이내로 인정한다.
4	슈프레인 인정기준	<p>슈프레인(성분 : Desflurane)은 용해도와 대사율이 낮아 마취유도 및 회복이 신속하며, 장기독성의 위험성이 매우 적은 약제이므로 대한마취과학회 의견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적응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및 장기이식수술</li> <li>- 신생아 마취(마취유도 목적으로 사용시 제외)</li> <li>- 간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마취시 사용한 경우</li> <li>-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li> </ul> <p>나. 인정용량</p> <p>초회량 15ml/15분, 유지량 10.7ml/15분</p>

		<p>변증은 증후(證候)를 정확히 인식하여 증과 증사이의 관계 및 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으로써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의무 기록은 다음과 같으며 증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증(主症)이나 차증(次症), 설진(舌診), 맥진(脈診)과 그외 임상과정상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증상들인 변증 지표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음 -</p> <p>가. 치료 및 처치, 투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주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있는 경우</p> <p>나.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 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p> <p>다. 삼초변증(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p> <p>라. 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p> <p>마. 장부변증(臟腑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p> <p>바. 상한변증(傷寒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p> <p>사. 사상변증(四象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p> <p>아.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p> <p>자.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의한 변 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p>
5	<b>아40(변증기준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 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b>	

## ☞ 변경

연번	제 목	변경 전	변경 후
1	<b>프로류킨주의 인정기준 (421)</b>	<p>프로류킨주(성분명 : Aldesleukin)는 동 약제 허가사항(효능 · 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음 -</p> <p>가. 투여대상 환자</p> <p>원발성 신세포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환자로서</p> <p>(1)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전이성 신세포암(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p> <p>(2) 이학적 검사나 방사선학 검사로 전이병변 진단, 측정 가능한 경우</p> <p>(3) ECOG Performance Score 0~1</p> <p>(4) 18세 이상환자(18~75세)</p> <p>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동 약제 허가사항 중 투여 금기(사용상의 주의사항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p>	<p>프로류킨주(성분명:Aldesleukin)는 동 약제 허가사항(효능 · 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음 -</p> <p>가. 투여대상</p> <p>환자원발성 신세포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환자로서</p> <p>(1)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전이성 신세포암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또는 이학적 검사나 방사선학 검사로 전이병변 진단, 측정 가능한 경우</p> <p>(2) ECOG Performance score 0~1</p> <p>(3) 18세 이상환자(18~75세)</p> <p>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동 약제 허가사항 중 투여금기(사용상 주의사항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p>

1	<p>나. 투여용량 및 기간 프로류킨주, 인터페론 <math>\alpha</math>, 5-FU 병용시 투여용량(8주 치료를 1cycle로 함)</p> <p>(1) 제2차 치료주기부터는 완전관해, 부분관해, 불변 환자만이 다음 주기 치료를 계속하고, 질환이 진행 되는 환자는 투여대상에서 제외한다.</p> <p>(2) 3주기 치료 후 첫 완전관해를 이루었을 때는 4번째 강화 치료주기를 주며, 부분관해 및 불변환자의 유지요법 여부는 사례별로 결정한다.</p> <p>※참고사항(식약청장 허가사항 中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ECOG ≥ 2인 환자</li> <li>(2) 아래 3가지 예후인자를 동시에 전부 가진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환자의 상태가 ECOG 1 또는 그 이상인 경우</li> <li>(나) 전이된 부위(폐전이, 골전이, 기타 부위로의 전이로 분류함)가 1군데보다 많은 경우</li> <li>(다) 종양의 최초 진단일과 프로류킨 치료 시작일자 사이의 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li> </ul> </li> <li>(3) 심한 심장병 경력을 가졌었거나 현재 심한 심장병을 가진 환자, 심장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stress test를 수행하여야 한다.</li> <li>(4) 항생제 치료를 요하는 심한 활성감염이 있는 환자</li> <li>(5) 도파민 또는 다른 혈압상승제에 금기증인 환자</li> <li>(6) 휴식시 PO2 &lt; 60mmHg인 환자(7) 주요 장기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환자</li> <li>(8) 중추신경계에 전이된 환자 또는 발작질환이 있는 환자, 단, 성공적으로 뇌전이종양을 치료한 환자는 제외한다(negative CT : 신경학적으로 안정함)</li> <li>(9) 人再組合(Human recombinated) 인터류킨-2 등 인단백에 알려진 과민반응 병력을 가졌던 환자</li> <li>(10) 탈륨스트레스시험 혹은 폐기능시험 결과 비정 상적인 사람</li> <li>(11) WBC &lt; 4,000/mm<sup>3</sup>, 혈소판 &lt; 100,000/mm<sup>3</sup>, HCT &lt; 30%인 환자</li> <li>(12) 혈청빌리루빈 수치 및 크레이티닌 수치가 정상밖에 있는 환자</li> <li>(13) 부신피질스테로이드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li> <li>(14) 자가 면역질환 환자</li> <li>(15) 장기이식환자</li> </ul>	<p>나. 투여용량 및 기간 좌동</p> <p>※ 참고사항 좌동</p>
---	--	---

1		<p>(16) 프로류킨 1차 투여시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낸 환자에게는 재투여 해서는 안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속적인 심실성 빈박(<math>\geq 5</math>beats)</li> <li>(나) 조절되지 않는 심장박동의 장애</li> <li>(다) ECG 변화를 동반한 재발성 흉통</li> <li>(라)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li> <li>(마) 72시간 이상의 삽관(Intubation)이 필요한 경우</li> <li>(바) 심근주위의 병적압박(Temponade)</li> <li>(사) 72시간 이상의 투석을 요하는 신장</li> <li>(아) 48시간이상 지속되는 혼수 및 중독 정신병 (Toxic Psychosis)</li> <li>(자) 반복적인 혹은 조절이 어려운 간질증상</li> <li>(차) 장의 허혈/천공</li> <li>(카) 수술을 요하는 위장관 출혈</li> </ul>	
2	유로시트라액 의 인정기준 (259)	<p>유로시트라(Urocitira)는 요로결 등과 같이 장기간 알카리성뇨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질환, 통풍치료시 Uricosuric Agent의 보조요법, 신세뇨관 이상으로 인한 산성증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서 뇨를 알카리화하여 요석의 배출을 촉진시키고 결석의 형성이나 성장을 억제하여 요석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투여시 인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ESWL, 내시경하쇄석술 또는 절석술(절개후 제거) 시행후 잔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p> <p>나. 요로결석이 동반된 통풍</p> <p>다. 요로결석이 동반된 신세뇨관 산증</p>	<p>유로시트라는 요로결 등과 같이 장기간 알카리성뇨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질환, 통풍치료시 Uricosuric Agent의 보조요법, 신세뇨관 이상으로 인한 산성증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서 뇨를 알카리화하여 요석의 배출을 촉진시키고 결석의 형성이나 성장을 억제하여 요석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투여시 인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ESWL, 내시경하쇄석술 또는 절석술(절개후 제거) 시행후 잔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p> <p>나. 저구연산뇨증 24시간 소변 검사결과 구연산(citrate) 320mg 미만을 동반한 요로결석</p> <p>다. 요로결석이 동반된 통풍</p> <p>라. 요로결석이 동반된 신세뇨관 산증</p>